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57 사기
피 고 인 ○○○
검 사 구태연(기소), 김건(공판)
변 호 인 <생략>
판 결 선 고 2014. 6.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1.경 피해자 ■■■대부금융 유한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전화하여,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은 생활비, 병원비로 쓰느라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없을 정도여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5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9%의 이자를 내고 원금은 2016. 7.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작성의 고소보충진술서, 우리은행 입금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약서, 대부업체등록현황확인에 의하면, 피고인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2013. 7. 11. 피해자 회사로부터 350만 원을 변제기 2016. 7. 10., 이율 연 39%, 이자 지급일 매월 1일(350만 원에 대한 연 39%의 비율에 의한 월 이자는 113,750원이다)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대출 이후 3개월 이내에 직장에서 퇴사할 예정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3. 8. 14. ▲▲▲ 주식회사에서 퇴사하고, 2013. 11. 25.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조정을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 및 변호인 제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① 통상 고율의 이자와 장기의 변제기를 정하여 대여하는 피해자 회사와 같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금융이용자는 제1금융권 이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피해자 회사 또한 이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② 대부업체는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채무자의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고, 피해자 회사 역시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조회·이용 동의서와 급여 계좌 내

역을 제출받은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해자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수입, 직업 등 피고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지 아니한 점, ④ 한편, 피고인은 역류성 식도염 등으로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힘들게 생산직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2013. 8. 14. 퇴사하지 않았다면 월 약 200만 원의 급여로 월 10만 원 정도의 이 사건 대출 이자는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첫 이자 지급일 무렵 직장에까지 채권추심을 위한 전화를 하였다가, 피고인이 2013. 8. 3. '직장 생활을 못할 정도로 소문이 났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여 2013. 8. 13.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추심행위 중단을 권고받았는바, 건강 악화와 근로의욕 저하 등 사후적 사정이 퇴사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은 2013. 12. 31.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 사건 대출 원금 35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되 이자율과 변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승인 결정을 받고, 2014. 1. 13.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위 승인 결정의 상환 일정에 따라 이자를 성실하게 지급하고 있는 점, ⑦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위 승인 결정은 금융기관 대출채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원금은 조정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승인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실만으로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류희상 _____